접수 번호

처리 기간: 즉시

##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제한 [ ]해제 신청서

※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, 해당하는 내용 앞의 [ ]에 √표를 합니다.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일자

※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신청 제한(해제) 대상자 (총 명)				
신청인과의 관계	성 명	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		
※ '신청인과의 관계'는 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[세대주의 배우자, 세대주의 직계혈족,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, 세대원의 배우자(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), 세대원의 직계혈족(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)]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.				
	11-1			
신청인 (본인)	성명			주민등록번호
			(서명 또는 인)	
	주소 (시·도)	(시・군・구)		
	연락처			
신청인 (세대원 및 직계존비속)	성명		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
	연락처		(418 ±2 2)	
신청인 (세대원 및 직계존비속)	성명			주민등록번호
			(서명 또는 인)	
	연락처			
신청인 (세대원 및 직계존비속)	성명			주민등록번호
			(서명 또는 인)	
	연락처			
신청인 (세대원 및 직계존비속)	성명			주민등록번호
			(서명 또는 인)	
	연락처			

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제한을 ([ ]신청, [ ] 해제 신청)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・군수・구청장, 읍・면・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

- ※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다만,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・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나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1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
- 2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
- 3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
- 4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
- 5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 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

첨부 서류

- 6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 지시설 입소 확인서
- 7. 「노인복지법」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 사실확인서
- 8. 「노인복지법」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\_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
- 9.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
- 10.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 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
- 11. 「아동보호심판규칙」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·보호처분·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
- 12. 「가정보호심판규칙」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·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서의 등본 또는 초본
- 13. 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·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
- 14. 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
- 15. 「경찰수사규칙」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
- 16.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

## 유의 사항

- 1.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2.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제한 신청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읍·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.

## 작성 방법

- 1. '신청인'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.
- 2. '신청인과의 관계' 칸에는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해당 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.

수수료

없음